

2022년6월18일 서울시 지적측량9급

1.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측량을 실시하고자 한다. 세션 관측시간과 데이터 취득간격을 옳게 짹지는 것은?

세션 관측시간 데이터 취득간격

- ① 30분 이상 30초 이하
- ② 30분 이상 60초 이하
- ③ 60분 이상 30초 이하
- ④ 60분 이상 60초 이하

해설) 기본서 P605

제7조(정지측량)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할 것
2. 관측성과의 기선벡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번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할 것.
3. 관측시간 등은 다음 표에 의할 것

구 분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세부측량
기지점과의 거리	10km 미만	5km 미만	2km 미만	1km 미만
세션 관측시간	60분 이상	30분 이상	10분 이상	5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	30초 이하	30초 이하	15초 이하	15초 이하

2.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 삽입망, 사각망, 삼각쇄 또는 삼변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 ③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해설) 기본서 P254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삽입망(插入網)·사각망(四角網)·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3.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성과표의 기록 및 관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설치기관
- ② 좌표 및 표고
- ③ 측량연월일
- ④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해설) 기본서 P261

지적측량시행규칙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등) ①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성과고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성과표 기록·관리
지적삼각점 성과표 (시행규칙제4조)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지적삼각보조점 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6. 도선 등급 및 도선명 7. 표지의 재질 8. 도면번호 9. 설치기판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성명 및 조사 내용

4. 각측량기기를 이용한 수평 및 수직각 관측 시 망원경을 정위, 반위로 측정함으로써 소거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 ① 수평축 오차
- ② 시준선 편심(외심)오차
- ③ 연직축 오차
- ④ 시준축 오차

해설) 기본서 P152

각측량의 오차보정(정오차의 원인과 처리 방법)

① 조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오차의 종류	원인	처리 방법
시준축오차	시준축과 수평축이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망원경을 정·반위로 관측하여 평균을 취한다.
수평축오차	수평축이 연직축에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망원경을 정·반위로 관측하여 평균을 취한다.
연직축오차	연직축이 연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소거불능

② 기계의 구조상 결점에 따른 오차

오차의 종류	원인	처리 방법
회전축의 편심오차 (내심오차)	기계의 수평회전축과 수평분도원의 중심이 불일치	180° 차이가 있는 2개(A, B)의 베니어의 읽음값을 평균한다.
시준선의 편심오차 (외심오차)	시준선이 기계의 중심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망원경을 정·반위로 관측하여 평균을 취한다.
분도원의 눈금오차	눈금 간격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베니어의 0의 위치를 $\frac{180^\circ}{n}$ 씩 옮겨가면서 대회 관측을 한다.

5. 「지적확정측량규정」상 확정측량 결과도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표시 색상을 옳지 않게 짹지은 것은?

- ① 지적기준점 - 검은색

② 도곽선 - 붉은색

③ 지적기준점 번호 - 붉은색

④ 색인도 - 검은색

해설) 기본서 P645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23조(확정측량 결과도 작성) ① 확정측량 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지번 및 지목
3. 경계점 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다만,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
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6. 도곽선과 그 수치

7. 확정 경계선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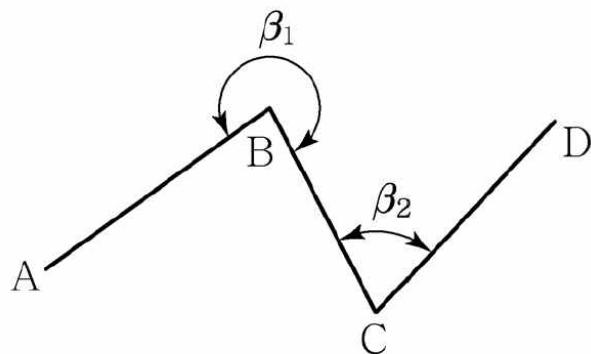
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② 제1항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제2호, 제4호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제5호와 제8호는 **검은색**으로, 제1항제4호중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와 제6호는 **붉은색**으로, 그 밖의 사항은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의 작성은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작성한다.

6. <보기>에서 축선 \overline{CD} 의 방위각 값은? (단, 축선 \overline{AB} 의 방위각은 $116^{\circ}30'20''$, $\beta_1 = 274^{\circ}10'20''$, $\beta_2 = 71^{\circ}10'30''$ 이다.)

〈보기〉



① $96^{\circ}51'00''$

② $96^{\circ}51'40''$

③ $101^{\circ}51'00''$

④ $101^{\circ}51'40''$

해설) 기본서 P157 3번 9번

$$V_B^C = V_A^B - 180^{\circ} + \beta_1 \\ = 116^{\circ}30'20'' - 180^{\circ} + 274^{\circ}10'50'' = 210^{\circ}41'10''$$

$$V_C^D = V_B^C - 180^{\circ} + \beta_2 \\ = 210^{\circ}41'10'' - 180^{\circ} + 71^{\circ}10'30'' = 101^{\circ}51'40''$$

7.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GNSS 측량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폐합기선장의 총합이 10km 미만일 때 기선벡터 각 성분($\Delta X, \Delta Y, \Delta Z$)의 폐합차가 3cm를 초과하면 재관측하여야 한다.
- ②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은 10° 이상으로 한다.
- ③ 정지측량방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 시 세션 관측 시간은 10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은 30초 이하로 한다.
- ④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방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 시 PDOP은 3이내, 기선거리는 1km 이내로 한다.

해설) 기본서 P604, P607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6조(관측) ① 관측 시 위성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 |
|---|
|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5° 이상에 위치할 것 |
| 2. 위성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
| 3.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일 것 |

② GNSS측량기에 입력하는 안테나의 높이 등에 관하여는 GNSS측량기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관측 후 확인한다.

③ 관측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1. 안테나 주위의 10미터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
| 2. 관측 중에는 무전기 등 전파발신기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10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할 것 |
| 3.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
| 4. 관측 중에는 수신기 표시장치 등을 통하여 관측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에는 재관측을 실시할 것 |

④ 관측 완료 후 점검결과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측조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관측을 하여야 한다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7조(정지측량)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할 것
- 관측성과의 기선벡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번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할 것.
- 관측시간 등은 다음 표에 의할 것

구 분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세부측량
기지점과의 거리	10km 미만	5km 미만	2km 미만	1km 미만
세션 관측시간	60분 이상	30분 이상	10분 이상	5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	30초 이하	30초 이하	15초 이하	15초 이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8조(이동측량) ①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지적도근측량 또는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또는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다.

②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으로 실시할 경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측전 이동국 GNSS측량기의 초기화 작업을 완료할 것
- 관측 중 위성신호의 단절 또는 통신장치의 이상으로 보정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이동국 GNSS측량기를 재초기화 할 것

3. GNSS측량기 안테나를 기준으로 고도각 15° 이상에 정상 작동중인 GNSS위성이 5개 이상일 것
4. GNSS측량기에 표시하는 PDOP이 3이상이거나 위치정밀도가 수평 $\pm 3\text{cm}$ 이상 또는 수직 $\pm 5\text{cm}$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할 것
5. 1, 2회의 관측치가 제5항제4호의 오차 이내일 경우에는 1회 관측치를 기준으로 결과부를 작성
6. 지역좌표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GNSS측량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좌표변환 계산방법에 의할 것
7.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 시 기선거리는 5km이내로 한다.

구 분	관측횟수	관측 간격	관측시간 (고정해)	데이터 취득 간격
도근측량	2회	60분 이상	60초 이상	1초
세부측량	2회	60분 이상	15초 이상	1초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기선해석의 점검) ① 서로 다른 세션에 속하는 중복기선으로 최소변수의 폐합다각형을 구성하여 기선벡터 각 성분(ΔX , ΔY , ΔZ)의 폐합차를 계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폐합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에 의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관측을 하여야 한다.

폐합기선장의 총합	$\Delta X, \Delta Y, \Delta Z$ 의 폐합차	비 고
10km 미만	3cm 미내	
10km 이상	$2\text{cm} + 1\text{ppm} \times D$ 미내	D : 기선장(km)

8.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상 변환계수 산출에 필요한 공통점 결정 씨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관측성과와 대상지역의 변환성과간 연결교차 기준을 옳게 짹지은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그 밖의 지역

- | | | |
|---|--------|--------|
| ① | 5cm | 10cm |
| ② | 7.5cm | 12.5cm |
| ③ | 10cm | 15cm |
| ④ | 12.5cm | 17.5cm |

해설) 기본서 P752

제10조(공통점 결정) ① 변환계수 산출에 필요한 공통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적기준점 중에서 세계측지계 관측성과와 대상지역의 변환성과간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인 지적기준점으로 결정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7.5cm

2. 그 밖의 지역 : 12.5cm

② 사업시행자는 변환구역 내 필지에 대하여 변환 이전의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으로 지적측량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통점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측량성과 결정	지적삼각점	0.20m

	지적삼각보조점	0.25m	
지적도근점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m	
	그 밖의 지역	0.25m	
경계점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0m	
	그 밖의 지역	10분의 3Mmm (M 은 축척분모)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기준	지적삼각점	$\pm 20\text{cm}$	
	지적삼각보조점	$\pm 25\text{cm}$	
	지적도근점	$\pm 15\text{cm}$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	
	경계점	$\pm 10\text{cm}$	
지적재조사측량성 과결정	지적기준점	$\pm 0.03\text{m}$	
	경계점	$\pm 0.07\text{m}$	
지적공부세계측지 계변환규정 (변환성과 검증)	경계점좌표등록 부 시행지역	5cm	
	그 밖의 지역	10cm	
지적공부세계측지계 변환규정(공통점 결정)	경계점좌표등록 부 시행지역	7.5cm	
	그 밖의 지역	12.5cm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우리나라의 세계측지계를 따르는 평면직각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원점의 축척계수는 1이다.
- ② 서부좌표계, 중부좌표계, 동부좌표계 3개의 원점을 가진다.
- ③ 투영원점에 X축 500,000m, Y축 200,000m를 가산한다.
- ④ 투영원점은 북위 36° 에 위치한다.

해설) 기본서 P29

평면	직각	좌표	원점
平面直角座標原點			

명칭	경도	적용범위	위도	투영원점의 가상수치	원점의 축척계수
서부원점	동경 125°	동경 $124\sim 126^{\circ}$	북위 38°	$X^N : 600,000\text{m}$ $Y^E : 200,000\text{m}$	1.0000
중부원점	동경 127°	동경 $126\sim 128^{\circ}$	북위 38°		
동부원점	동경 129°	동경 $128\sim 130^{\circ}$	북위 38°		
동해원점	동경 131°	동경 $130\sim 132^{\circ}$	북위 38°		

☞ 각 좌표에서의 직각좌표는 다음 조건에 따라 T.M(Transvers Mercator)방법으로 표시.

- ① X축은 좌표계원점의 자오선에 일치하여야 하고 진북방향을 정(+)으로 표시하고 Y축은 X축에 직교하는 축으로서 진동방향을 정(+)으로 표시.
- ② 세계측지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 상사 이중투영법으로 표시하되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의 가산(可算)수치를 각각 종축좌표 X값을 38°N 이하에서도 음(-)의 값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0,000m(제주도는 550,000m) 횡축좌표 Y값에는 200,000m로 하여 사용.

10. 지적도 1/1,000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을 <보기>와 같은 다양한 위치결정법으로 시행하였을 때,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들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도선의 수평거리는 광파측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보기>

- ㄱ. 후방교회법을 수행하면서 방향각의 교각은 45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하였다.
- ㄴ. 도선법을 수행하면서 도선의 변은 15개로 하였다.

- ㄷ. 전방교회법을 수행하면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1mm인 시오삼각형이 발생하여 원의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하였다.
- ㄹ. 방사법을 수행하면서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2cm이하로 하였다.
- ㅁ. 거리를 측정할 때 도각선의 신축량이 0.9mm여서 실측거리를 보정하지 않았다.
- ㅂ.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를 10cm로 설정하였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해설) 기본서 P372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기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을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現形法)·도상원호(圖上圓弧)교회법·지상원호(地上圓弧)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③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른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른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方位標定)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光波照準儀)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측량결과 시오(示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④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로 연결할 것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frac{\sqrt{N}}{3}$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그 오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

$$M_N = \frac{e}{N} \times n$$

(M_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를 말한다)

⑤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평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각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각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text{보정량} = \frac{\text{신축량(지상)} \times 4}{\text{도각선길이합계(지상)}} \times \text{실측거리}$$

⑦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준의[앨리데이드(alidade)]를 사용한 경우

$$D = l \frac{1}{\sqrt{1 + \left(\frac{n}{100}\right)^2}}$$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 앤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 = l \cos \theta \text{ 또는 } l \sin \alpha$$

(D는 수평거리, l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⑧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frac{M}{10}$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11.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보기>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의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 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

- ① 지적삼각점측량
- ② 지적세부측량
- ③ 지적도근점측량
- ④ 지적삼각보조점측량**

해설) 기본서 도표

지적측량시행규칙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른 것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것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것
 4. 세부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것
-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획의 수립
 2. 준비 및 현지답사

3.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4.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12.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 ②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른다.
- ③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1방향각에 대하여 60초 이내로 한다.
- ④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의 경우 측량결과도는 500분의 1로 작성한다.

해설) 기본서 P371~P372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中央縱距)의 길이는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⑩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를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4.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를 것 다만,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讀定)할 것

6.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종별	1방향각	1회 측정각과 2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
공차	60초 이내	40초 이내

13. GNSS측량으로 측점의 타원체고를 구하였더니 23.962m였다. 이 지점의 지오이드고가 5.910m라면 정표고의 값[m]은?

- ① 18.052
- ② 21.007
- ③ 26.917
- ④ 29.872

해설) 기본서 P609

$$\begin{aligned} \text{정표고} &= \text{타원체고} - \text{지오이드고} \\ &= 23.962 - 5.910 = 18.052\text{m} \end{aligned}$$

14. <보기>는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⑦~⑩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 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따른 경우 :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 선의기지 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 ⑦ 초 이내, 2등도선은 ⑧ 초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따른 경우 :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⑨ 분 이내, 2등도선은 ⑩ 분 이내로 할 것

- | <u>⑦</u> | <u>⑧</u> | <u>⑨</u> | <u>⑩</u> |
|---------------------------|------------------|-------------------|-------------------|
| $\pm 10\sqrt{n}$ | $\pm 20\sqrt{n}$ | $\pm \sqrt{n}$ | $\pm 1.5\sqrt{n}$ |
| $\pm 10\sqrt{n}$ | $\pm 20\sqrt{n}$ | $\pm 1.5\sqrt{n}$ | $\pm 2.0\sqrt{n}$ |
| <u>③</u> $\pm 20\sqrt{n}$ | $\pm 30\sqrt{n}$ | $\pm \sqrt{n}$ | $\pm 1.5\sqrt{n}$ |
| $\pm 20\sqrt{n}$ | $\pm 30\sqrt{n}$ | $\pm 1.5\sqrt{n}$ | $\pm 2.0\sqrt{n}$ |

해설) 기본서 P346 11번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 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배각법		방위각법	
	1등도선	2등도선	1등도선	2등도선
	$\pm 20\sqrt{n}$ (초)	$\pm 30\sqrt{n}$ (초)	$\pm \sqrt{n}$ (분)	$\pm 1.5\sqrt{n}$ (분)
n 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1회와 3회측정값 교차	30초 이내			
측각오차의 배분	$K = -\frac{e}{R} \times r$ (측선장에 반비례)		$K_n = -\frac{e}{R} \times S$ (변의 수에 비례)	
연결오차의 허용범위	1등도선		2등도선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frac{1}{100}\sqrt{n}$ 센티미터 이하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frac{1.5}{100}\sqrt{n}$ 센티미터 이하	
n 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 축척분모는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1/500, 1/6,000 지역은 1/3,000로, 축척이 2 이상인 때는 대축척				

15. <보기>는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에 대한 설명이다. ⑦~⑩에 들어가는 수를 모두 더한 값은?

<보기>

ㄱ.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종별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삼각형 내각관측이 합과 180도와의 차	기지각과의 차
공차	<u>⑦</u> 초 이내	\pm <u>⑧</u> 초 이내	\pm <u>⑨</u> 초 이내	\pm <u>⑩</u> 초 이내

ㄴ. 연직각을 관측 및 계산하는 경우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⑪ 회 관측하고,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⑫ 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① 162

② 163

③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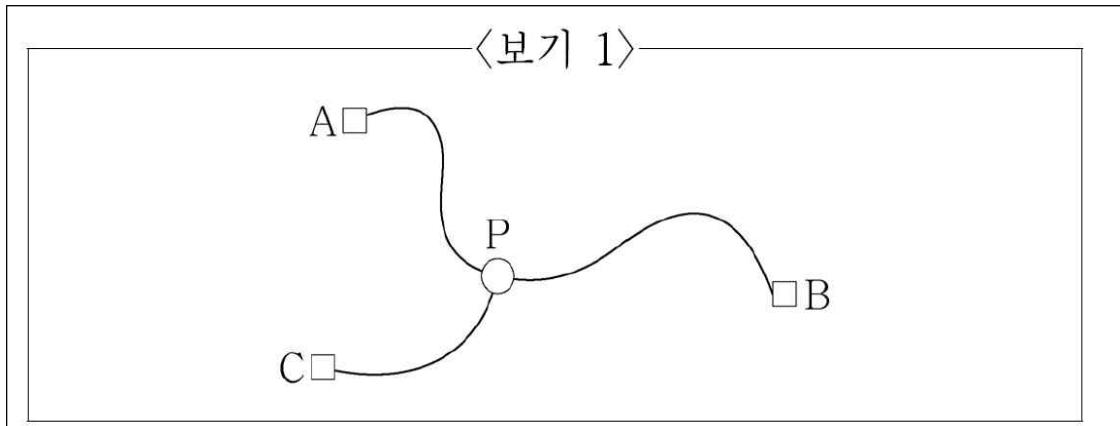
④ 213

해설) 기본서 도표

지적측량시행규칙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수평각관측		3대회 방향관측법($0^\circ, 60^\circ, 120^\circ$)
수 평 각 의 측 각 공 차	1방향각	30초 이내
	1측회 폐색	± 30 초 이내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 30 초 이내
	기지각과의 차	± 40 초 이내
점간거리 계산		5회 측정, 허용교차는 평균치의 1/10만 이하
삼각형	내 각	세 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
	기지각과의 차	기지각과의 차는 ± 40 초 이내
연직각	관측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2회 관측, 허용교차가 30초 이내인 경우 평균치를 연직각
	표고	2개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 계산하여 교차가 $0.05\text{미터} + 0.05(S_1 + S_2)\text{미터}$ 이하인 때에 평균치를 표고로 한다. (S_1, S_2 :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km 단위)

16. <보기 1>과 같이 A, B C 수준점에서 P점의 표고를 직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한 결과가 <보기 2>와 같다. P점의 표고에 대한 최확값[m]은?



<보기 2>

노선	수준값(m)	거리(km)
A → P	37.30	2.00
B → P	37.70	4.00
C → P	37.20	2.00

① 37.30

② 37.31

③ 37.32

④ 37.34

해설) 기본서 P101 예제문제

경중률은 노선거리(S)에 반비례한다.

$$P_1 : P_2 : P_3 = \frac{1}{S_1} : \frac{1}{S_2} : \frac{1}{S_3} = \frac{1}{2} : \frac{1}{4} : \frac{1}{2} = 2 : 1 : 2$$

$$L_0 = 37 + \frac{0.3 \times 2 + 0.7 \times 1 + 0.2 \times 2}{2+1+2} = 37.34m$$

17. 종중복도 65%, 횡중복도 30%로 항공사진측량을 하였을 때, 촬영 종기선길이와 횡기선길이의 비는?
(단, 사진의 크기는 29.7cm×29.7cm이다.)

① 1 : 2

② 1 : 3

③ 2 : 1

④ 3 : 1

해설) 기본서 P584 79번

$$\begin{aligned} B : C &= ma\left(1 - \frac{p}{100}\right) : ma\left(1 - \frac{q}{100}\right) \\ &= \left(1 - \frac{65}{100}\right) : \left(1 - \frac{30}{100}\right) \\ &= 0.35 : 0.7 = 35 : 70 = 1 : 2 \end{aligned}$$

18.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면적측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면측정기에 따른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②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다.

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④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인 경우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한다.

해설) 기본서 P378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 좌표에 따를 것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허용면적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A = 0.026^2 M \sqrt{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S = \frac{\Delta X_1 + \Delta X_2 + \Delta Y_1 + \Delta Y_2}{4}$$

(S는 신축량, ΔX_1 는 원쪽 종선의 신축된 차, ΔX_2 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ΔY_1 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ΔY_2 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text{이 경우 신축 된 차(밀리미터)} = \frac{1000(L - L_0)}{M}$$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_0 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 도각선의 보정계수계산

$$Z = \frac{X \cdot Y}{\Delta X \cdot \Delta Y}$$

(Z 는 보정계수, X 는 도각선종선길이, Y 는 도각선흉선길이, ΔX 는 신축된 도각선종선길이의 합/2, ΔY 는 신축된 도각선흉선길이의 합/2을 말한다)

④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 전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 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축척이 1/5,000인 지형도에서 두 점 간의 거리가 20cm라면, 축척이 다른 지형도에서 같은 두 점 간의 거리가 10cm일 때 이 지형도의 축척 값은?

- ① 1/1,000
- ② 1/2,500
- ③ 1/10,000
- ④ 1/20,000

해설) 기본서 P136

$$\frac{1}{m} = \frac{l}{L} \text{에서}$$

$$L_1 = ml = 5,000 \times 0.2 = 1,000m$$

$$L_2 = ml = x \times 0.1$$

$$\therefore 5,000 \times 0.2 = x \times 0.1$$

$$\therefore x = \frac{1,000}{0.1} = 10,000$$

20. 전자기파거리측량기에 의한 거리측량 시 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오차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온측정 오차
- ② 위상차관측 오차
- ③ 광변조주파수 오차
- ④ 기압측정 오차

해설) 기본서 P130

전자파 거리측거기(EDM)의 오차

⇒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

① 광속도 오차	진공 중의 광속도는 국제적으로 299,792.5km로 규정되어 있다. 광속도의 오차는 매우 미미하므로 무시한다.
② 광변주파수의 오차	주파수에 의한 오차는 거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관측거리 D 에 미치는 오차 ΔD 는 $\Delta D = -\left(\frac{\Delta f}{f}\right) \cdot D$ <p>여기서, f : 주파수 Δf : 주파수의 오차 D : 거리</p>
③ 굴절률 오차	전자파 에너지의 굴절에 의한 오차를 Δn 이라 하면 $\text{거리오차 } \Delta D = -\left(\frac{\Delta n}{n}\right) \cdot D$

⇒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오차

① 영점오차(기계정수, 반사경정수)	측정기기에 따른 오차로 2~3mm 정도
② 위상차 측정 오차	위상차 검출기 자체의 분해능과 관측자의 관측오차에 의한 것으로 이 크기는 일반적으로 파장의 $\frac{1}{1,000}$ 점이다.
③ 측정기와 반사경의 구심오차	기계 또는 반사경의 중심과 지상측정이 일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편 심오차는 단거리관측에서는 1~2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